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8.] [조례 제6002호, 2018. 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제2조(법인격)**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제3조(설립운영)**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0-24>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4. 지역의 각종 경제와 사회지표의 수립
5.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배포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연구분야 비교검토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2조제5항 관련 기능과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수정·보완과 평가·분석 기능 수행
8.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연구원과 직원의 임면)** ① 연구원에 연구원과 직원을 둔다.

- ② 연구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제6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조성한다.

- ② 제1항의 기금은 인천광역시, 군·구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2015-12-28>

- 제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초빙연구원)** 연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연구·조사의 위탁과 자료의 제공)**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과 관계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방행정과 관계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영·관리)**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인천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삭제 2011-10-24>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규칙, 정관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후 지체없이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연구센터의 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후 지체없이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연구원의 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0 조례 제3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6 조례 제39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 등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의 선임방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06-18 조례 제4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4 조례 제4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8 조례 제6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라목 중“(재)인천발전연구원”을 “인천연구원”으로 한다.